

행정자치부

주의요구

제 목 사용기준 부적합 원료(석창포) 사용제품 품목제조보고 수리 부적정

기관명 경상남도

관계기관 창녕군, 남해군, 산청군, 함양군

내용

식품을 제조·가공 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관할 시·군에 제품의 생산 시작 전 또는 시작 이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며

「식품위생법」 제7조,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식품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해서는 식품의 기준과 규격(이하, ‘식품공전’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연도 별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르면 품목제조 보고 받은 등록 관청은 보고 받은 사항이 「식품위생법」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²¹³⁾인 석창포²¹⁴⁾의 사용조건을 “물추출물에 한하여 사용가능”으로 개정²¹⁵⁾하고 시·

213)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 등재된 동·식물성 원료로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에 따라 가공전 원재료 중량으로 원료배합비를 50%미만을 사용하여야 함

214) 식품 제조시 사용량이 제한된 원료인 석창포에 대하여 물추출물 형태로만 식품에 사용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은 석창포에 베타-아사론(β -asarone) 성분이 들어 있는데 유럽식품과학위원회에서 해당 성분이 독성이 있다고 발표함에 따라 해당 성분의 독성을 제거하고 사용하기 위한 조치

도(시·군·구) 식품위생담당부서에 기존 석창포가 함유된 식품 품목제조 보고에 대한 제조공정을 검토하고 변경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²¹⁵⁾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남도 ○○○○과는 관내 시·군·구에 해당 고시 시행일(2016. 1. 1.) 이후 품목제조보고에 대해 개정된 석창포의 사용조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통보(경상남도 ○○○○과-00000호, 2015. 00. 0.)하였다.

따라서 경상남도 시·군·구 식품위생 담당부서는 2016. 1. 1.이후 ‘석창포’를 원료로 사용한 품목제조보고에 대하여는 제조공정(물추출 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용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시 반려 등의 조치를 하고, 2016. 1. 1. 이전 품목제조보고 한 것에 대하여는 변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경상남도 창원군, 남해군, 산청군, 함양군에서는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인 ‘○○○○ 등 4개소’가 2016. 1. 1. 이후 물 추출한 석창포가 아닌 석창포(뿌리)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품목제조 보고한 ‘○○○ 등 4개 제품’에 대해 별도의 조치 없이 수리하였고,

‘(주)○○○○○○○○○○ 등 2개소’가 2016. 1. 1. 이전 품목제조 보고한 ‘○○○ 등 2개 제품’에 대해 변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창원군수, 남해군수, 산청군수, 함양군수는

앞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품목제조보고를 한 경우 식품에 사용이 불가능한 원료 등을 철저히 확인·검토하는 등 식품품목제조보고 수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215)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2015-78호, '15.10.29.) [별표 2]

216) 식품 원료 관련 업무협조 요청(식약처 ○○○○과-000, 2015.00.0.)